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 바우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42
----------	------

발의년월일 : 2017. 8. 21.
발의자 : 송바우나 의원 등 8명

1. 제정이유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인권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안 제1조)
-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법이 정하는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 범죄 피해자 사생활과 신변의 보호 규정 함 (안 제5조)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대해 규정함 (안 제6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명시 (안 제7조)
-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사항을 명시 (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1

4.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2

5. 비용추계서 : 붙임 3(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6. 관련사업 계획서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결과 : 의견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부서 검토의견서

【붙임 1】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안산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법인 중 안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이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생활과 신변의 보호 등)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

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 진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관련 예산 및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위한 경찰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방법 등에 관해서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안산시의회
임 시 의 원		송 바우나 의원 대표발의 (행정 3569)
안 자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3042
----------	------

제안년월일 : 2017. 8. 21.
제 안 자 : 기획행정위원장

□ 수정이유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지원하는 운영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만 지원토록 수정 함.

□ 주요골자

-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운영비 지급 근거 삭제(안 제8조)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이 수정한다.**

안 제8조 중 “운영 또는 사업” 을 “사업” 으로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u>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방법 등에 관해서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 ----- 사업----- --. ②(생략)